

『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』 모집공고

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·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2023년도 예비 기술 청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년 3월 20일

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년 5월 ~ 2024년 1월
- 지원대상 : 혁신적인 기술기반*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만 18세~39세 이하 예비 ~ 1년 미만 창업자
 - * 기술기반 업종 : 제조업, 지식서비스 분야(ICT·AI·빅데이터 등)
- 지원규모 모집규모 : 15팀
- 지원내용 : 창업사업화 지원(최대 40백만원), 창업교육 및 특화프로그램

2. 참여대상자 자격요건

-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육성대상 예비창업자*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 강원도 내에서 창업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
 - *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
 - ※ 대학(원) 재학생 참여 불가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참여 가능)
- 공고일* 기준 강원도내 본점 소재지를 두고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*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G-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 공고일(3월 17일) 기준

- 총사업비 중 자부담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(사본)*을 제출하는 사람
 - 총사업비 중 20% 자부담(현물 10%이하, 현금 10%이상)
 - * 이행보증보험은 사업기간과 관리기간을 포함하여 가입
-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(기업)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,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(기업)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, 부도·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

◆ 이종·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(5자리)를 기준으로 함
 (세세분류 일치 시 : 동종업종으로 판단 / 세세분류 불일치 시 : 이종업종으로 판단)
 ◆ 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 - 경제부문 - 표준분류 - 한국표준산업분류 (KSIC) - 자료실 - 최신개정 -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

3. 지원제외

-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지원제외)
-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은 동일과제*로 신청하는 자
 - * 동일한 창업과제 : 핵심기술·소재·제품이 동일한 창업과제(기존 제품의 개선, 기존 제품의 기술 적용, 기존 핵심소재에 다른 소재의 결합 등)
- 중앙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
- 정부, 지자체, 유관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경험이 있는 자
-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(채무상환 중인 사람 포함)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도용하여 제출한 자

4. 지원내용

○ 사업화 지원금 최대 40백만원 지원(20백만원 ~ 40백만원), 창업교육(40시간)

구 분	예산 범위	집행 주요내용(예산항목)
합 계	100%	-
참여인력 인건비	총사업비 30% 이하	- 사업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규채용하는 인력 인건비 예산 범위내 집행 가능 - 대표자와 현물로 잡은 직원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
사업화 사업비	총사업비 40% 이상 가능	- 외주용역비 - 재료비, 마케팅비 - 기계장치 구입(총사업비 10% 이하) - 기자재임차비 - 특허권·무형자산취득비
창업공간 임차료 (지급수수료)	총사업비 10% 이하	- 사무실, 작업공간 등(지급수수료)
기술정보활동비 (지급수수료)	총사업비 10% 이하	- 시험인증비, 기술이전비, 멘토링비, 교육훈련비 - 회계감사비(의무계상)
현물산정비	총사업비 10% 이하	- 재료비, 대표자/직원 인건비, 기자재비, 사무실 임차비 현물 자부담 산정

* 총사업비 지원조건 : 도비 80%, 자부담 20%(현물 10%이하, 현금 10%이상)

5. 접수 및 선정

○ 접수기간 : 2023. 3. 20.(월) ~ 4. 7.(금) 18:00까지 ※ 마감시간 엄수

○ 접수방법 :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

○ 접수처 :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hih913@korea.kr

○ 신청서류(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) :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등

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발표평가

- 1차 서면심사(주관기관) → 2차 발표심사(운영기관)

○ 가점부여 : 아래 항목별 0.5점을 부여하며 최대 2점까지 부여

-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(단, 권리권자에 한함)

- (기창업자) 여성·장애인·벤처기업

- 최근 2년 이내 도내 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

-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(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최·주관 대회에 한함)

-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G-아카데미 창업교육 이수자

○ 특례사항 : 창업경진대회(도가 보조하는 대회 한정) 1등 과제 우선 선발

※ 입상 후 3년 이내(공고일 기준)만 신청 가능,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자의 경우 적용 불가,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한정

○ 우대사항 : 강원형 뉴딜사업, 강원도 역점시책 관련 업종

※ 강원형 뉴딜사업관련(이모빌리티,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(액화수소 등), 의료 빅데이터 등) 및 강원도 역점시책(특수 목적용 드론, 스마트 수산 등) 우대

6. 사업 추진절차



7. 유의사항

○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(예비)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“지방재정법” 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은 전액 반환 조치합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창업자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강원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 - 팀원으로 참가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수혜받았던 사업계획서로 신청하는 것도 도용의 범주에 포함
- 신청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한 경우,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 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 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시제품 제작 등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
 - 실패범위 : 사업종료까지 시제품 미완성, 또는 사업 기간 종료까지 사업자 등록 미이행, 의무교육 미수료(24시간)
- 사업종료 후 1년의 관리기간 동안 휴폐업,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비 기 집행분 전액 환수
- 사업종료 후 3년 기간 동안 운영기관 및 주관기관의 사업화 현황, 경영성과 등 조사에 성실히 응답하고 관련 자료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.

8. 문의처

- 운영기관 -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
 - ☎ 033-248-7982, e-mail : hjwizer@ccei.kr
- 주관기관
 - (영동권)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
 - ☎ 033-660-8099, e-mail : hih913@korea.kr